12.17일(수요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노동부 Ministry of Labor

보 도 자 료

위기관리대책추진단장 김유진 서기관
지역고용개발팀장 김영중/황계자 사무관

위기관리대책추진단 TEL : 02) 2110-7155
지역고용개발팀 TEL : 02)6902-8474
F A X : 02) 502-6855

▶ 2008. 12. 16 배포
▶ 총 4 쪽

노동부, 고용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관리 강화 등「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확정·발표

□ 노동부장관은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08년 12월 1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경제위기에 대응한 노동시장 위기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노동부장관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08년 11월 취업자 증가가 78천명에 그치는 등 금융시장 위기가 고용부진으로 이어지고, 내년도 고용여건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 참석자들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초부터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도 대비해 위기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2차('09~'1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최근 국내외 경제악화로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08. 10월 현재 건설업의 전체 취업자 수는 1,83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천명 감소

* '08. 10월 현재 건설업 수주는 전년동월 대비 23.9% 감소(잠정)

○ 이 기본계획은 「매력적인 건설일자리, 보다 나은 건설근로자의 삶 보장」이라는 비전 제시와 아울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 2차 계획에서는 그간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아 온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건설근로자 특성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계획이다.

  * 5대 핵심추진과제 : ①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②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③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④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⑤특화된 복지프로그램 제공

-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기본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차원에서 별도의 조성금을 마련하여 건설업에 특화된 고용·훈련·복지사업을 총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핵심 추진과제
2 :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1부. 끝.

제22차 고용정책심의회
2008. 12. 17(수)

제1호 안건(심의안건)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안) ('09~'13) (요약)

2008. 12. 17

노 동 부

목 차

Ⅰ. 수립 배경 및 추진경과 ····· 1

Ⅱ.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 2

Ⅲ.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 3

Ⅳ.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 4

Ⅴ. 중점 추진과제 ····· 5

1. 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 5

2. 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 6

3.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7

4.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 8

5. 특화된 복지프로그램 제공 ····· 9

Ⅵ. 전담추진체계 구축 및 재원 조성 ····· 10

Ⅶ. 향후 조치계획 ····· 11

Ⅰ. 수립 배경 및 추진경과

○ **(수립배경)** 건설산업은 GDP의 6.9%(51.4조원)를 차지하고, 약 **180만명**이 취업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나 **고용구조가 불안정**하고 **근로여건도 취약**

-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고용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아직도 추가적인 제도정비 등 개선해야 할 부문이 많은 상황**

- 이에 건설근로자의 노동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추진과제 발굴을 위하여 고용정책실장 주관으로 **Working Group**을 **구성·운영**('08.7~ 9)

* **Working Group** : 건설고용분야를 9개 핵심과제로 분류, 노동부·전문가·노사단체·현장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고용정책실장 주관**으로 7차례 검토회의 개최

- 관계기관 검토회의(11.19)를 거쳐 의견수렴 및 반영

○ **(계획기간) 2009년 ~ 2013년(5년)**

▣ **법적 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기본 목적** : 중장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기본계획의 주요 범위**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④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⑤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에 관한 사항
⑥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Ⅱ.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기능인력 양성 및 복지증진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산업차원으로 확산하는데 기여**
◈ 전담조직 미비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계획관리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성과는 미진**

○ **(고용구조개선 미진)** 시공참여자제도 폐지('08년)로 제도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 아직 현장은 종전제도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커 고용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 **(불합리한 근로관행 지속)** 건설현장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도입,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등으로 법적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었으나

- 현장에서는 아직도 **각종 편법을 통해 불합리한 근로관행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영세업체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도 낮은 실정**

○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미비)** 훈련컨소시엄, 노사공동훈련 등 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훈련 접근방식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 건설산업의 규모에 비추어 교육훈련, 인력수급 및 자격체계 등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화되지 못함**

○ **(취업지원서비스 취약)**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 건설일용근로자 대부분은 현장 동료나 용역센터 등 부실한 취업루트에 의존하는 등 **고용서비스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실정**

○ **(사회안전망 및 복지수준 미흡)** 종전 공식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 퇴직공제제도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

- 다만, 여전히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건설일용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도 매우 제한적**

Ⅲ.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 **(건설경기 전망)**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중기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당초 계획대로 다양한 국책사업이 추진될 경우 **연 3-4% 성장 전망**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8~2012, 국토해양부)에서 계획기간 동안 건설투자가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력수급 전망)** 청년인력 신규 유입 부족 등으로 건설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숙련 기능인력은 연 평균 약 8만 명 부족** 예상

  * 청년층 취업자수 : '00년 272천명→'07년 175천명

- 건설업 부족인원은 **외국인력이 상당부분 보완**

  * 2008년 상반기 현재 건설업 전체 취업자에서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불법취업자 포함 약 17만 명)수준 추정(한국노동연구원)

○ **(고용구조)** 생산직의 88.4%가 **임시·일용직**(30인 이하 규모에서는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고용되는 **취약한 고용구조**

- 하도급 생산구조에 의해 건설근로자의 80.1%(사무직 근로자 57.4%, 생산직근로자의 89.4%)는 **30인 이하 영세업체에 집중**

○ **(근로실태) 장시간·휴무일** 근로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임금수준**(제조업의 86%)과 **서면계약 체결 비율(50.5%)이 낮은 편**

  * '07년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10.1시간(전산업평균 7.9시간) ('07 설문조사)

- **산재발생률**(전체 재해자의 21.1%)이 **높고**, 사고발생 시에는 사망(전체 사망자의 26.2%)등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04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일용근로내역 신고** : '04년 394천명→'05년 455천명→'06년 546천명→**'07년 616천명**

Ⅳ.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Ⅴ. 중점 추진과제

1. 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1) 건설업 고용구조의 개선

○ 건설기능인력을 일정 비율(수) 이상 상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고용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계속고용지원금 우선 적용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으로 **육성**

- 고용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행위 단속**을 **강화**

(2) 건설사업장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유도

○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고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제도** 관련 법 조항을 **정비(건고법)**

○ 건설업체 고용관리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카드 또는 EDI신고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건설고용보험관리 지원금 지급**

(3) 무분별한 외국인력 활용 방지

○ 건설업 **취업동포 쿼터**를 설정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와 인력부족 문제가 조화롭게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 **정기적인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현장 외국인의 정확한 규모 및 근로실태 파악

(4) 법정 근로조건 이행 정착

○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주휴일·법정근로시간 준수,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건설현장 지도·감독 강화**

-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조기 정착**

2. 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1) 거점 훈련기관 확충 및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구축

○ 건설기능인력 **훈련시설이** 산업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하므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거점 훈련기관을 확충**

○ 정기적인 **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건설기능인력 훈련 계획**을 수립·실시

- 다양한 훈련교재 개발·보급 및 기능훈련 교사 양성 강화

(2) 청년층 기능인력 유입 촉진

○ 건설기능직종에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훈련생에 대한 **산업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제도** 마련

* 추가 훈련인센티브 지급 및 생계비 대부, 체계적인 경력관리, 장기해외 연수기회 부여 등 검토

- 건설기능 훈련수료생에 대하여는 건설업체 **인턴사원제 활용** 유도, 상시고용 연계 시 지원방안 등 강구

(3)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체계 마련

○ **건설 기능인력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심기능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과 자격 관리 기틀 마련

- 건설 기능인력의 경력증명서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4) 자격의 활용 및 현장성 강화

○ 건설현장 수요에 적합한 **기능장 등 자격종목 신설**과 함께 **현장에 맞지 않는 종목 정비 추진**

○ 건설기능인력의 훈련, 자격출제 등의 기준이 되는 **직업능력표준**을 개발·활용

○ **건설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여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3.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건설 취업지원 공공서비스 강화

○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능력개발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 산업안전, 도면보기 등과 같이 현장에서 실제 지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일일취업센터** 3개소(대구, 대전, 울산) **활성화**를 통해 건설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하는 방안 마련

(2) 민간의 건설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취업지원 민간위탁기관을 양성하여 **무료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

-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취업·복지지원서비스 제공**

○ 우수한 **유료직업소개소를 선별하여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서비스기관**을 **양성**

- 과다한 수수료를 받거나 근로자 공급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불법 직업소개소 단속 강화**

(3) 원활한 취업지원 기반 구축

○ 양질의 구인정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주 단체 등을 활용**하여 **구인개척 사업 추진**

- 구인개척기관의 구인정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하여 무료 **취업지원기관**에서 **공동 활용**

○ 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추고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전문인력 교육연수 및 사기진작**

4.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1) 안전교육 이수제도(Green Card) 도입

○ 건설근로자가 채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교육결과를 입력한 그린카드를 발급

* 교육 이수자에게는 채용 시 안전교육을 면제하고, 건설현장에서 교육이수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지도

- 대기업 현장부터 시범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사까지 연차적으로 확산

< 산업차원의 Green Card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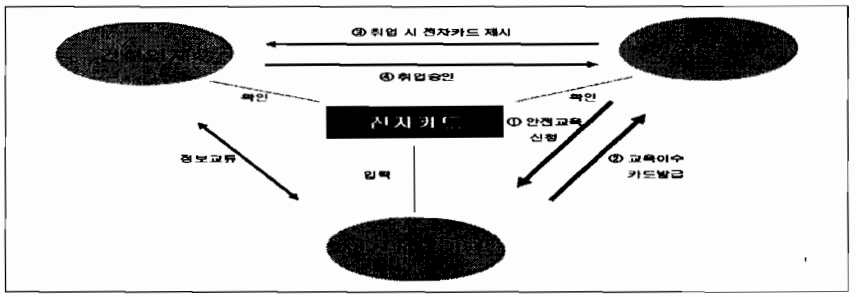

(2) 설계 및 감리 시 산업안전 고려 강화

○ **시설물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요소가 고려되도록 **공공발주공사** 설계 심의 시 **산업안전전문가 참여 제도화**

○ **시공과정**에서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감리업무 범위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구체화

(3)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집중관리

○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기법을 개발·보급, **대-중소기업 안전관리협력모델**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 추락·낙하 등 재래형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안전관리 취약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관리** 방안 마련

<5> 특화된 복지프로그램 제공

(1) 건설근로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중심**으로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복지사업을 개발·제공**

- 건설근로자의 **복지수요를 조사**하여 우선순위가 높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복지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예시 : **대부사업**(주택구입비, 전세자금, 자녀결혼자금 등), **장학사업**(자녀 대학입학금), **특정질환 순회검진사업, 새벽인력시장 쉼터 설치** 등

○ 이동식 편의시설 임대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 도입 가능성도 병행 검토**

(2) 퇴직공제제도 적용 확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08년 현재 의무가입공사** : 5억원 이상 공공·민자유치 공사, 민간 200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공사(전체 공사대비 18%, 공사금액 기준 57% 해당)

○ 법정 퇴직금과 유사한 수준의 부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공제부금을 경제상황 고려 하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1일 공제부금은 4천원이며 연간 252일 근무 시 공제금 혜택은 평균 100만원 수준(법정퇴직금 평균 약 260만원)

(3)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사업장 단위에서 피보험자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보험 신고 해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강화**

○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을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같이 **소득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업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Ⅵ. 전담추진체계 구축 및 재원 조성

<1>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 확대

○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허브기관**」으로 **확대 개편**

- 건설 산업의 **고용-훈련-복지** center link(서비스는 민간기관 등을 최대한 활용) **및 Sector Council** 역할 수행
- 재원은 **산업차원에서 조성하는 재원**과 **정부위탁사업비, 수익사업** 등으로 운영

<2> 전담추진체계 구축

○ 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사단체 등이 포함된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 기본계획 추진 관련 법령 개정, 재원확보, 공제회 기능 개편, 신규사업 기획 등의 업무 추진

○ 고용정책심의회의 하부기구로 **「건설고용정책전문위원회」**를 **신설**,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 **노동부 본부에 건설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2차 기본계획 주요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를 담당

<3> 재원 조성

○ **국토해양부, 사업주단체 등과 협의**하여 **산업차원의 재원조성** 방안 마련

- 이와 함께 매년 퇴직공제금 적립금액 중 **휴면공제금 기준을 설정**하여 피공제자 대상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산업차원의 재원조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등의 확대 지원방안 마련**

*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건설업 / 전산업 비교, %, '07) : **계 52.8** / 90.0, **고용안정·능력개발 26.9** / 83.3, **실업급여 66.8** / 93.8

Ⅶ. 향후 조치계획

1 건설 고용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09년)

○ 동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공제회 기능 확대, 산업차원의 재원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노동부) 등

2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액션 플랜" 마련 ('09년 상반기)

○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 개편 및 기능 확대 등을 구체화한 "액션 플랜" 마련**('09년 상반기)

- 공제회의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기금 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 "액션 플랜"마련을 위해 공제회 내에 작업팀을 구성·운영(필요시 인력 채용 및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3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작성 및 추진상황 관리(계속)

○ 본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

○ 신설 예정인 「**건설고용정책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에 전문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안) ('09～'13)

2008. 12. 17

노 동 부

목 차

Ⅰ. 수립 배경 및 추진경과 ····· 1

Ⅱ.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 3

1. 1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3
2.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 4

Ⅲ.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 6

1. 건설경제 동향 및 전망 ····· 6
2. 건설기능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 ····· 7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 9
4. 건설근로자의 근로실태 ····· 10

Ⅳ.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 12

Ⅴ. 세부 추진방안 ····· 13

과제 1. 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 13

1-1 건설업 고용구조의 개선 ····· 13
1-2 건설사업장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유도 ····· 14
1-3 무분별한 외국인력 활용 방지 ····· 15
1-4 법정 근로조건 이행 정착 ····· 16

과제 2. 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 17

2-1. 거점 훈련기관 확충 및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구축 ····· 17
2-2. 청년층 기능인력 유입 촉진 ····· 18

2-3.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체계 마련 ····· 19
2-4. 자격의 활용 및 현장성 강화 ····· 20

과제 3.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1

3-1. 건설취업지원 공공서비스 강화 ····· 21
3-2. 민간의 건설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22
3-3. 원활한 취업지원 기반 구축 ····· 23

과제 4.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 24

4-1. 안전교육 이수제도 도입 ····· 24
4-2. 설계 및 감리 시 산업안전 고려 강화 ····· 25
4-3.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집중관리 ····· 26

과제 5. 특화된 복지프로그램 제공 ····· 27

5-1. 건설근로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27
5-2. 퇴직공제제도 적용 확대 ····· 28
5-3.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29

Ⅵ. 추진체계의 정비 및 재원조성 ····· 30

1. 건설근로자 공제회 기능 확대 ····· 30
2. 전담 추진체계 구축 ····· 32
3. 재원조성 ····· 33

Ⅶ. 향후 조치계획 ····· 34

Ⅷ. 정책과제 소관부처(협조기관) 및 추진일정 ····· 35

Ⅰ. 수립 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 건설산업은 GDP의 6.9%(51.4조원)를 차지하고, 약 **180만명의 인력**이 취업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

□ 그러나 건설업은 수주산업, 중층적 하도급 생산구조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용구조가 불안정**하고 **근로여건도 취약**

○ 특히 외국이나 타 산업에 비해 **주로 영세업체에 일용·임시직형태로 고용**되는 심한 고용구조 편중현상

○ 인맥 및 용역회사 등 **부실한 취업루트, 어깨너머 기술습득 관행** 지속, **낮은 사회안전망** 등에 노출

○ 아울러 저 출산·고학력화에 따른 **신규인력의 유입 정체**와 기존 숙련인력의 **빠른 고령화 진행**이라는 이중고에 처함

□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

□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아직도 추가적인 제도정비 등 개선해야 할 부문이 많은 상황**

○ 이에 **건설근로자의 노동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시행**하고자 함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범위

▣ **법적 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기본 목적** : 중장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기본계획의 주요 범위**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④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⑤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에 관한 사항

⑥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추진경과

○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연구(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종합복지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등 **연구용역** 실시

○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추진과제 발굴을 위하여 **Working Group**을 **구성·운영**('08.7~ 9)

※ **Working Group** : 노동부·전문가·노사단체·현장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9개 과제에 대하여 **고용정책실장 주관**으로 7회 검토회의를 통하여 **논의**

○ 노사단체, 유관기관, 관계부처 등과 협의('08. 11)

⇒ 본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실천**

Ⅱ.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1)]

1. 1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제1차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 1차 계획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각 정책목표별로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도출·시행

< 중점과제 >	<세부추진과제>
직업능력개발체계 확충	○ 건설기능인력 양성체제의 확충 ○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기반 마련 ○ 건설산업 교육훈련위원회 설치 검토 ○ 건설관련 자격제도의 합리화 ※ 건설업의 훈련컨소시엄 제도 도입,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해 건설업 기계·장비분야의 훈련 확대 등 15개 세부과제를 추진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개선 ○ 고용·산재보험 기준 완화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유도 ○ 공공직업안정기관 취업알선 강화 및 민간 취업알선조직 연계방안 강구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사업주단체에 의한 고용관리개선 교육·연수지원, 고용보험전자카드제도 시범 운영, 고용관리개선비용 지원방안 강구 등 ※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용근로자 전담창구 설치·운영, 일용근로자 취업알선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실시, 일일취업센터 확대 개편, 워크넷과 민간 인력정보 연계 등
건설근로자 복지증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 ○ 건설일용근로자 건강검진기반 조성

1) 세부추진과제 평가 (붙임 1) 참조

2.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 성과

○ 제1차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초로 종합적·체계적인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님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기능인력양성 및 복지증진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산업차원으로 확산하는데 기여**

* 1차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 평가 < 붙임 1 > 참조

《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 건설업의 **훈련컨소시엄 및 노사공동훈련** 등 건설사업주의 수요에 밀착하는 훈련방식 도입·추진

□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04년) 및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 시범 실시('04년)

○ 사업장내 보험업무 등의 처리를 위한 **고용관리 책임자에 대한 지원금** 제도 신설('06년)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 도입**('06년)

□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확대** 및 **공제부금 상향조정**

* 적용범위확대('04년,'08년) : 공공공사 10억이상→ 5억이상
민간 공동주택공사: 300호이상→200호이상

* 공제부금인상 : ('06년)2,000원→('07년)3,000원→('08년)4,000원

○ **건설현장 편의시설 제공 의무 신설**

- 1억 이상 건설공사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제공 의무화 ('07년 건고법 개정)

□ 한계

◈ 제1차 기본계획은 다양한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었으나 **전담조직 미비와 계획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전반적인 성과는 미진**

○ **(고용구조개선 미진)**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제도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 아직 현장은 종전제도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커 고용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 **(불합리한 근로관행 지속)** 건설현장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도입,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등으로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었으나

- 현장은 **각종 편법을 통해 불합리한 근로관행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영세업체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도 낮은 실정

○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미비)** 훈련컨소시엄, 노사공동훈련 등 다양한 방식의 훈련이 개발되고 있으나

- 건설산업의 규모에 비추어 교육훈련, 인력수급 및 자격체계 등 **기능인력을 양성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화되지 못함**

○ **(취업지원서비스 취약)** 민간단체를 활용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제대로 양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 건설일용근로자 대부분이 현장 동료나 용역센터 등 부실한 취업 루트에 의존하는 등 **고용서비스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실정**

○ **(사회안전망 및 복지수준 미흡)** 종전 공식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 퇴직공제제도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

- 다만, 여전히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건설일용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도 매우 제한적**

Ⅲ.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1. 건설경제 동향 및 전망

□ **(주요동향) 최근 경기 침체** 등에 따라 SOC투자 정체, 민간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 투자가 부진

*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08. 3/4분기 기준) 2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별 기준으로 볼 때 **금년 9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40.4%**나 **감소**

○ **건설경기 진작 및 건설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5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20,000개 창출을 목표로 **공공 및 민간의 건설투자 확대**를 추진 중

* 금년 중 SOC사업 재투자(1.35조원), '09년 말까지 공기업 투자 4조원('08년 0.2조, '09년 3.8조), 등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정**

○ **또한 SOC 민간투자사업 신규 발굴 및 국민임대주택 조기 착공**(3,230호)도 예정

□ **(전망)**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건설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기적으로는** 계획대로 경기회복이 진전되고 새만금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국책사업이 추진될 경우 **당초 투자전망인 연 3-4% 증가 수준을 달성**할 전망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8~2012, 국토해양부)에서 계획기간 동안 건설투자가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건설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청년층의 기능인력 유입이 진전되지 못할 경우 숙련인력 공급 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대비 필요

2. 건설기능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

◇ 향후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는 경우, 건설투자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건설 산업**의 **인력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고령화의 심화와 청년인력 신규 유입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숙련기능인력**은 **연 평균 약 8만 명 부족** 예상

□ **수요측면**

○ 2차 계획기간 동안 전체 건설근로자 수요는 연평균 약 200만 명, 사업이 정점에 이르는 **'12년에는 최고 20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다만, 동 전망은 최근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진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인력수요가 동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중장기 건설인력 수요 전망(2009~2013)>

구 분	건설인력 수요(천명)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총계
2009	638	659	694	1,991
2010	670	679	687	2,037
2011	668	653	664	1,984
2012	704	681	655	2,040
2013	665	666	626	1,956

* 김재영 외(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 대책 수립방안 연구(국토연구원)

□ 공급측면

○ '07년 전체 취업자(2,343만 명)중 **건설업 취업자**는 **185만 명**(7.9%), 그 중 **기능인력(생산직)은 136만 명임**

- **건설기능인력[2]의 공급**은 건설경기 둔락에도 불구하고 '03년부터 130만 명 내외 수준(건설업 전체취업자 중 **73.5%**)에서 **정체 현상**

< 건설업 취업자 및 건설기능인력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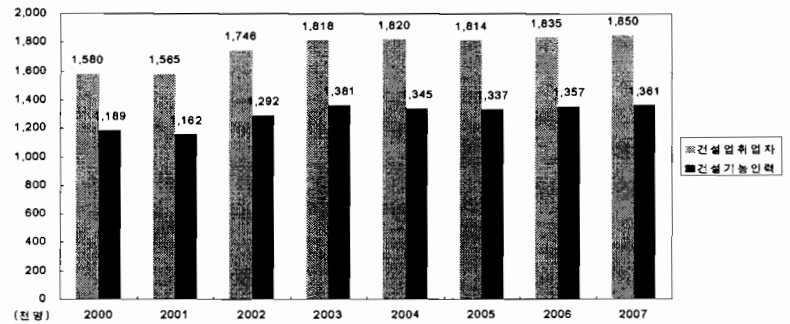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타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급격히 감소,** 건설업의 20대 비중은 ('00년) 272천명→ ('07년)175천명으로 감소
- **40대 이상**의 구성비는 **계속 증가**, '07년 69.7%로 전 산업 구성비(56.4%)에 비해 13.3% 높음

○ 현재의 건설업 부족인원은 **외국인력이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2008년 상반기 현재** 건설업 전체 취업자에서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불법취업자 포함 약 17만 명)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국노동연구원)

2) 건설기능인력: 기능직, 건설기계조작자, 단순노무인력 등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 **영세규모 사업체에 편중된 고용구조**

○ 하도급 생산구조에 의해 건설근로자의 **80.1%**(사무직 근로자 57.4%, **생산직근로자의 89.4%**)는 **30인 이하 영세업체에** 고용된 상태

* '08. 6월 현재 건설업체수 : 55,818개 업체(국토부, 건설경제 주요통계)

< 건설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분포>

(단위: 천명, %)

사업체 규모	계(비율)	사무직	생산직
계	1,507(100.0)	434(28.8)	1,073(71.2)
300명이상	55(3.7)	49(89.4)	6(10.6)
100~299명	58(3.9)	42(71.5)	17(28.5)
30~99명	186(12.3)	94(50.8)	91(49.2)
10~29명	**409(27.1)**	150(36.8)	**258(63.2)**
5~9명	**468(31.0)**	73(15.5)	**395(84.5)**
1~4명	**332(22.0)**	26(7.8)	**306(9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8년 5월 원자료

□ **임시·일용직 위주의 취약한 고용구조 지속**

○ **불규칙한 수주**와 **기후여건**에 따라 변동 폭이 큰 작업량으로 인해 대다수 근로자는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

- **생산직의 88.4%**가 **임시·일용직**으로 고용(30인 이하 규모에서는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90% 이상)

< 사업체규모별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구분	사무관리직			생산직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계	**86.7**	**13.1**	**0.2**	**11.6**	**19.6**	**68.8**
300명 이상	95.9	4.1	0.0	58.0	42.0	0.0
100~299명	94.4	5.7	0.0	38.0	**27.3**	**34.7**
30~99명	90.5	9.5	0.0	38.0	18.5	**43.5**
10~29명	89.7	10.3	0.0	15.9	**20.8**	**63.3**
5~9명	75.9	22.7	1.4	7.0	**19.3**	**73.7**
1~4명	55.7	44.3	0.0	3.6	**18.4**	**7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8년 5월 원자료

4. 건설근로자의 근로실태

□ **(근로시간 · 주휴일)**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추세에도 불구하고, **장시간·휴무일 근로관행이 지속**

* '07년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10.1시간(전산업평균 7.9시간) ('07 설문조사)

< 건설근로자 1일 근로시간(근로자 응답)>

구 분		평균근로시간 구성비(%)
근로시간	계	100
	8시간 미만	2.7
	8시간 이상~9시간 미만	14.8
	9시간이상~10시간 미만	23.7
	10시간이상~11시간 미만	**36.6**
	11시간 이상	**22.3**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근로실태조사(2007. 5)

□ **(임금수준)** 임금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임금체불 규모도 큼

< 산업별 임금근로자 월 급여액 비교>

(단위: 천원)

산 업	'07.8	'08. 3
전산업	1,746	1,811
제조업	1,900	1,933
건설업	**1,644**	**1,679**

자료: 경활부가조사

* 건설업이 차지하는 임금체불 비중(전산업 기준)은 체불액은 12.6%, 체불근로자수는 11.6%로 제조업 다음으로 높고, 제조업에 비해 행정지도로 해결되는 비율이 낮음

□ **(근로계약)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낮아** 임금 등 근로계약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구분	계	서면계약	구두계약	체결안함	잘 모름 등
비율(%)	100	**50.5**	17.3	25.3	6.9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근로실태조사(2007. 5)

□ **(산업안전)** 건설업무 특성상 산재 노출 정도가 커 **산재발생률이 높고**, 사고발생 시에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

* **건설업 재해비중** : 전체 재해자의 21.1%, 사망자의 26.2%

○ 건설업에 대한 **산재예방투자액은 타 산업에 비해 극히 미약**

※ **산재보험료 수납액 대비 산재예방투자액 비율**('03년~'05년 평균)제조업은 15%, **건설업은 0.8%**(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산업안전공단 내부자료 2007. 2)

< 업종별 재해자 분포도('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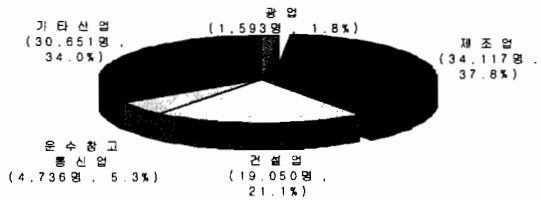

* 노동부, 산업안전통계(2007)

□ **(고용보험)** '04년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일용근로내역 신고** : '04년 394천명→'05년 455천명→'06년 546천명→**'07년 616천명**

○ 건설업에서 보험료 대비 **고용보험 지원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건설업 / 전산업 비교, %, '07) : **계 52.8** / 90.0, **고용안정 · 능력개발 26.9** / 83.3, **실업급여 66.8** / 93.8

□ **(이직률)** 위와 같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타 산업에 비해 연간 **이직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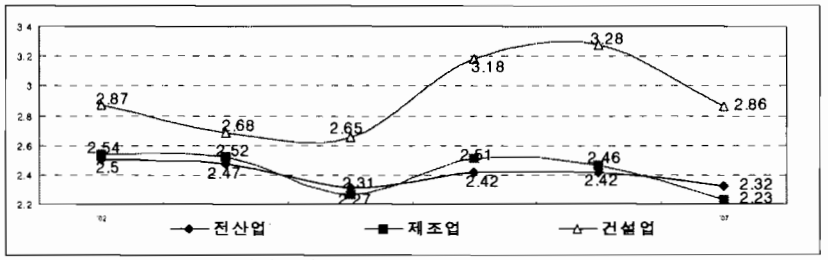

* '07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Ⅳ.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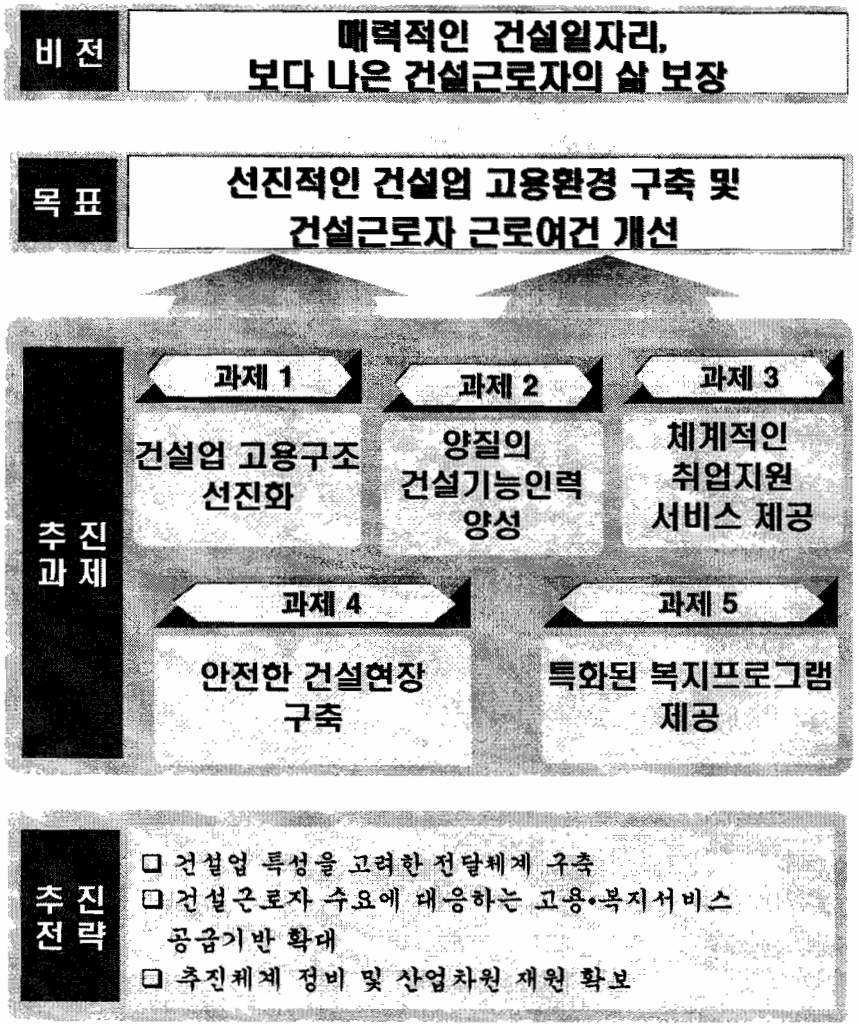

Ⅴ. 세부 추진방안

과제 1 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정책방향

◇ 임시·일용직 중심의 건설업 고용구조를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상시고용 유도**

◇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강화**

◇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불 방지,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 등 **근로조건 개선**이 가능토록 **지도 감독** 및 **자율적인 개선 유도**

1-1 건설업 고용구조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금년부터 직접시공제 강화 등에 따라 건설업체의 핵심기능인력 보유에 대한 유인은 되고 있으나 **계속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 상시고용이 어려운 실정

○ 건설업체의 **계속 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및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 필요

[2] 추진방안

□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 》** 임시·일용직 위주의 건설업 채용관행에서 벗어나 전체근로자 중 **일정 비율(인원) 이상의 건설기능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 강화

- **고용개선 협약을 체결**(노동부-국토부-기업 고용개선 협약 체결)하고 건설현장 고용관리 컨설팅 제공, 고용관리 전산화 지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우선 적용 등을 통해 고용개선효과를 극대화

□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개선》**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등 건설업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을 재검토하여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

※ 현행 **법정지원금 방식**에서 **공모형 사업방식**으로 전환 검토

□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 제도상으로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위법·편법을 동원하여 종전의 관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므로 **불법 건설 하도급행위 단속을 강화(국토해양부 소관)**

□ **《건설고용 포럼 운영》**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등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대한 인식제고**와 **우수사례 발표,** 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정기 포럼 운영**

1-2 건설사업장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유도

[1]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체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나, 영세 건설업체는 **고용관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

○ 고용관련 자료의 신뢰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전자카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면 확대는 어려운 실정

- 이에 따라 **EDI신고방식**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건설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2] 추진방안

□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 제도 정비》** 사업장 내에서 고용관리책임자가 법령에 규정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책임자의 자격 및 지정절차, 원수급인의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 등에 대한 법 조항을 정비

* 고용관리책임자의 기능: 근로자 **모집·고용·배치**, 교육훈련, 작업환경개선, 고용보험사무처리, 퇴직공제 등

□ **《고용보험관리지원금제도 개선》** 사업장 고용관리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 부여

- **전자카드 또는 EDI신고**실적에 대하여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서면신고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1-3 무분별한 외국인력 활용 방지

[1] 현황 및 문제점

○ 건설현장에 불법 체류자 및 방문취업자의 고용이 증가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건설업에 고용된 **외국인력의 정확한 규모와 근로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건설업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04년 하반기) 5. 21%→ ('08년 상반기) 9.33%로 증가**한 것으로 추계(한국노동연구원)

○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안전교육 실시할 필요

[2] 추진방안

□ **《건설업 취업허가제 실시》** 동포의 취업현황·사업체 수요·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업 취업동포 **쿼터**를 설정하여 국내 유입인력을 조정하고 **취업허가제**로 관리

* **취업허가제**: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포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기간(6개월~1년 단위)**허가를 받고 취업이 가능**

□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조사》**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외국 인력에 대한 정확한 규모 및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내국인 일자리 대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

1-4 법정 근로조건 이행 정착

[1] 현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의해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보장, 편의시설의 제공의무 등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

○ 다만, 합법적인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바, **사업주 인식제고**와 아울러 제도개선 내용을 **현장에 조기 정착시킬 수 있는 조치 필요**

[2] 추진방안

□ **《서면근로계약 확산》** 건설현장의 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서면근로계약 관행을 현장에 조기 정착

□ **《건설업 사용자 개념 정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의해 합법적인 건설업 사업주 범위가 변경(시공참여자는 불법)됨에 따라 건설업의 「사용자」 범위가 관련법 상호 간에 충돌되지 않도록 현행 노동관계법령 및 지침 등 정비

*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건설업 고용구조 변화에 기여

□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정착》**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의 모델 개발·보급** 및 **사업장 지도 강화**

* 이동식 편의시설(천막, 간이침대 등)에 대한 임대 사업 검토(공제회)

□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주휴일, 법정 근로시간, 임금 지불, 법정 편의시설 제공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집중감독** 실시

과제 2 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정책방향

◇ **건설생산직**이 **능력개발**을 통해 **숙련인력**이 되도록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훈련기회** 부여

◇ 건설근로자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현장수요에 맞는 자격체계** 구축을 통해 기능인력 활용 기반 강화

2-1 거점 훈련기관 확충 및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능인력 훈련은 사업주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 외에는 훈련시장참여자들이 없어 산업수요에 비해 **훈련기관이 절대 부족**

* **사업주단체** 2개소(충북음성, 인천), **사업주** 2개소(현대건설, 대우건설), **노사공동훈련** 6개소('06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운영, 주로 향상훈련)등 운영

○ 지역별·공종별로 구체적인 **훈련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훈련을 실시**, 훈련생 모집이 용이한 일부 직종 훈련에 편중 실시

* 석공, 형틀목공, 비계공, 철근·철물공, 도장·방수·미장·타일공 절대 부족

○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개발, 훈련교재·기자재 , 훈련교사의 질이 중요하나 **운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인프라 지원 부족**

[2] 추진방안

□ **《지역별 거점 훈련기관 확충》**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추어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훈련시설을 확충

- 공공·지자체 및 민간 등이 운영하는 건설기능 훈련기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존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신설**을 추진

* **대형 국책사업 추진지역** 및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역(부산 등)**에 대하여 훈련기관 신설을 우선 검토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

□ **《훈련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매년 지역별·공종별로 **훈련수요조사**를 실시

- 집체훈련이 맞지 않는 특정 공종의 미숙련 인력에 대하여는 현장 OJT 지원 등 **기능인력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지역별 거점기관의 양성훈련규모를 결정하고, 동 기관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직종 등에 대하여는 지역별 실업자 훈련 공모제 등에 반영

□ **《훈련교재 개발 및 훈련교사 양성》 훈련기관**에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교재 및 기자재를 개발·보급(한국산업인력공단 협조)**

-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이 많은 **우수 기술인력 및 숙련공을 교사로 양성·활용(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협조)**

  * 기술사·기능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모하여 **산학겸임교사로 양성** 후 관리 및 활용**(기능훈련 교사 POOL 확보)**

2-2 청년층 기능인력 유입 촉진

[1] 현황 및 문제점

○ 기능근로자로서의 직업전망이 불투명하여 **청년층**이 **건설기능직 훈련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훈련 참여시 중도 탈락률이 높고 훈련 수료 후에도 진입을 기피

○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 감소로 **건설기능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향후 건설산업의 인력기반이 무너질 위험에 직면

[2] 추진방안

□ **《훈련생 인센티브 강화》** 청년층이 건설기능직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 대하여는 **산업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제도** 마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양성훈련생에 대하여 **추가인센티브** 지급 및 훈련 중 **생계비 대부** 등 별도의 복지제도 마련 검토

  *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아울러 해당분야 최고 기능인이 될 수 있도록 **장기 해외기능연수 기회 부여 검토**

□ **《인턴사원제 활용》 훈련수료생**에 대하여는 건설업체에 **인턴사원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고용 연계 시 지원방안**을 강구

2-3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체계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층이 건설업에 진입하여도 체계적으로 경력관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떨어지고 타 산업으로 이탈**하는 문제 심각

○ **체계적인 재교육**과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적인 경력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2] 추진방안

□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건설 기능인력의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격 관리, 재교육, 장기근속에 따른 복지혜택 자료 등으로 활용**

  * 경력관리대상은 훈련수료생부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건설 기능인력의 경력증명서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자격의 활용 및 현장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기능분야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뚜렷한 처우개선으로 연결되지도 못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미흡**하여 자격 취득에 대한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건설 기능은 현장에서의 경험과 숙련이 중요하나 현재 **자격이 숙련수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건설 관련 직무 중 자격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직무가 많음

[2] 추진방안

□ **《건설직종 자격증 활용방안 마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서의 「기능장」 우대 및 기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국토해양부 소관)**

□ **《자격의 현장성 강화》** 건설현장 수요에 적합한 **기능장 등 자격종목 신설**과 함께 **현장에 맞지 않는 종목 정비**를 동시 **추진**

- 현장의 숙련수준이 국가기술 자격 검정을 통하여 선별될 수 있도록 검정에 **실무능력 반영** 추진**(한국산업인력공단 협조)**

□ **《건설직종 직업능력표준 개발》** 건설기능인력의 **훈련, 자격 출제 등의 기준**이 되는 직업능력표준을 개발·**활용(한국산업인력공단 협조)**

* '03년부터 건설분야 2직종, 토목분야 3직종의 직업능력표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 개발, 자격기본법에 따라 부처별 소관 자격 또는 소관업무별 표준을 개발할 필요

□ **《건설기능경기대회 지원 강화》** 건설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여 건설기능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과제 3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정책방향

◇ 구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국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지원**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에 **지역별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NGO의 참여**를 **촉진**하여 부실한 취업루트 개선

3-1 건설 취업지원 공공서비스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건설생산직근로자에 대한 **공공취업지원서비스가 미흡**

○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단한 곳이 많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다양한 구직활동 대체 프로그램 제공 필요**

[2] 추진방안

□ **《동절기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 건설일용직이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 고용지원센터가 인정하는 **교육훈련 및 종합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

※ 산업안전, 도면보기 등과 같이 현장에서 실제 지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현재 운영 중인 **일일취업센터** 3개소(대구, 대전, 울산)를 해당 지역의 **NGO 등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안 검토**
- 수탁기관을 통한 건설일용직의 **구직활동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등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3-2 민간의 건설취업지원서비스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유료직업소개소에 의한 과다 수수료 징구**(근로자 일당의 10~ 20%를 수수료 및 교통비로 징구)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지자체(시·군·구)의 행정지도에는 한계

* 국내 유료 직업소개소 6,100개소

○ 공공서비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06년부터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노조 위주로 운영되고 **사업 참여기관이 저조**

* 충북경실련(청주), 전기공사협회 외에 건설노조 6개 지부에서 소규모로 운영

-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서비스 품질에도 한계

* '08년 사업비: 495백만원

[2] 추진방안

□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예정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민간위탁기관을 발굴하여 **무료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

-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지역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구인DB 공동활용** 등을 통해 수탁기관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양질의 직업소개소 양성》** 지역별로 우수한 직업소개소를 발굴하여 건설 직종으로 전문화를 유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과다한 수수료 징구를 방지**

-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차원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지원을 검토

* '06년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유·무료 직업소개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를 대상으로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한국고용정보원 협조)**

□ **《불법직업소개소 단속강화》** 과다한 수수료 징구 또는 근로자 공급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 강화

3-3 원활한 취업지원 기반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지역 NGO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지속적인 건설업체의 구인정보 획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참여가 저조

○ 취업알선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중요하나, **고용여건이 열악**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함

[2] 추진방안

□ **《구인개척 시범사업 추진》 양질의 구인정보 확보**를 위하여 **건설사업주 단체** 등에 구인정보 개척을 **위탁하는 사업 추진**

- 건설사업주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구인활동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구인정보를 제공, 유효구인정보 제공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구성

□ **《구인정보 통합 D/B구축》** 구인정보 통합 D/B를 구축하여 구인개척사업 위탁기관이 구인정보를 ON-LINE 등록하고, **무료취업지원서비스 기관**에서 **공동 활용**

- **무료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구직자 상담 및 구직자 관리 집중**
-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을 통하여 구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취업지원 전문인력 교육연수 및 사기진작》** 건설취업지원기관(공공·민간)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우수종사자에 대한 표창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과제 4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정책방향

◇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이수제도를 도입**

◇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도강화를 통한 **산업안전 확보**

4-1 기초안전교육 이수 제도(Green Card)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주로 비숙련공 위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률도 높은 상황**

○ 법정의무교육제도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법정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광범위한 안전교육 사각지대 존재**

[2] 추진방안

□ **《안전교육 이수제도 도입》**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 산업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

- 건설근로자가 채용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교육결과를 입력한 그린카드를 발급

  * 교육이수자에게는 채용 시 안전교육을 면제하고, 건설현장에서 교육이수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지도

- 대기업 현장부터 시범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사까지 연차적으로 확산

< 안전교육 이수제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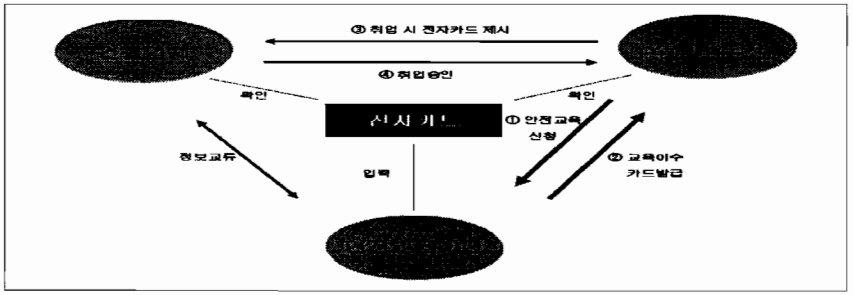

4-2 설계 및 감리 시 산업안전 고려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나 주로 시공단계에 국한되어 시행

- 또한 공사감독자(감리)의 업무범위에 산업안전보건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시공단계에서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유도에 한계

[2] 추진방안

□ **《공공발주공사 설계 시 산업안전전문가 참여》** 공공발주공사 **설계 심의**시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건설공사 기획, 설계 단계에서 근로자 안전요소가 반영되도록 조치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 **《감리에 의한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공사감독자(감리) 업무 범위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구체화하여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등

4-3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집중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영세한 규모의 건설현장은 **재정·기술적 능력의 부족**으로 안전관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중소현장은 재해예방 산업안전 전문지도 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며,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도 아니어서 **산업안전관련 지원과 지도가 절실히 요구됨**

[2] 추진방안

□ **《대- 중소기업 안전관리 협력모델 개발·보급》** 하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기법을 개발·보급하고 대-중소기업 안전관리협력 모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원·지도의 활성화》** 영세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기술지도·지원을 확대**

□ **《재해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감독 강화》** 추락·낙하 등 재래형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안전관리 취약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 강화**

과제 5 특화된 복지프로그램 제공

정책방향

◇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및 특성을 감안,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개발·추진**

◇ 보다 많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및 사회보험제도 운영 내실화**

5-1 건설근로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1]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각종 복지제도는 제조업 등 **상용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임시·일용직이 다수인 건설생산직근로자는 신청요건이 부합되지 않아 활용하기 곤란

- **건설기능직의 특성에 맞게 신청요건 등이 설계**되고, 공제제도 등과 연계하여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2] 추진방안

□ **《특화된 고용·복지사업 추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주축으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고용·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제공

* 예시 : **대부사업**(주택구입비, 전세자금, 자녀결혼자금 등), **장학사업**(자녀 대학입학금), **특정질환 순회검진사업 실시**, 새벽인력시장 쉼터 설치 등

- 건설근로자의 복지수요를 조사하여 우선순위가 높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복지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건설현장 편의시설 지원》**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이동식 편의시설을 임대하는 등 현장의 복지수요를 적극 개발 추진

* 건설사업주의 편의시설 제공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검토 가능

5-2 퇴직공제제도 적용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잦은 이동근로를 하는 건설 일용직은 특정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적용하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수혜가 어려워 **별도의 퇴직공제제도를 운영 중**

* **'08년 현재 의무가입공사** : 5억원 이상 공공·민자유치 공사, 민간 200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공사이며, 1일 공제부금 4천원('08년)임

○ **적용범위가 협소**하고(전체공사건수 대비 18%만 적용)법정퇴직금에 비해 **보장수준이 낮아 제도 보완이 필요**

* '08.8월 현재 15,700건(전체 공사대비 18%), 공사금액 기준 57% 해당, 연간 252일 근무 시 공제금 혜택은 평균 100만원 수준(법정퇴직금 평균 약 260만원)

[2] 추진방안

□ **《적용범위의 확대》**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임의가입공사에 대한 고용보험지원사업은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폐지 또는 활성화방안 강구

□ **《공제부금 상향조정》** 공제부금 일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건설일용직의 근로기간,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최종 퇴직금을 산정한 후, 법정 퇴직금과 유사한 수준의 부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공제부금을 상향 조정

* 공제부금 일액 변경 경과(발주 기준 적용): 2,000원('98년~'06년)→3,000('07년)→4,000원('08년)

5-3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보험별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사업주의 업무처리 부담 가중

○ 고용보험 가입 시 타 사회보험에 자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누락시키는 사례 다수 발생

[2] 추진방안

□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 강화》** 사업장 단위에서 피보험자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보험 신고 해태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지도감독 강화**

□ **《보험료 부과기준 통일》**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하여 사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

*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을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같이 **소득기**준으로 변경

Ⅵ. 추진체계 정비 및 재원조성

정책방향

◇ 기본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차원의 실행기구,** 정책 추진 진도를 총괄 관리할 **정부의 책임 있는 집행조직** 구축

◇ 건설산업에 특화된 고용·훈련·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차원**에서 **별도의 조성금**을 마련

1.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 확대

□ 필요성

○ 정부의 고용 및 복지정책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설업의 특성에 기반한 고용·복지 수요와 괴리 발생

○ 건설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전체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산업차원의 추진조직(Sector Council) 필요**

□ 전략과제

○ **《건설근로자공제회 확대 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허브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Sector Council역할 담당**

※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사업 총괄 추진기관은 기관 신설보다는 건설산업 차원에서 유일하게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 온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적합

- 공제회의 조직 및 기능 개편 관련 중요한 사항은 법적 근거를 신설

○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시스템 개선》** 건설 산업관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건설 기능인력의 양성 및 활용,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 등의 사업을 기획·집행·평가할 수 있도록 공제회 운영시스템 개선

《개편 후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요 기능 및 역할(안)》

◇ **기능** : 건설산업의 **고용- 훈련- 복지 center link 및 Sector Council** 역할 수행(서비스는 민간기관 등을 최대한 활용)

◇ **재원** : **산업차원에서 조성하는 재원**과 **정부위탁사업비, 수익사업** 등으로 운영

◆ 건설기능인력양성 지원사업

-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건설기능훈련기관 인프라 지원 및 훈련생 지원 사업
- 훈련교재 개발 및 훈련교사 양성 사업

◆ 건설기능인력 취업지원 및 고용환경개선 사업

- 취업지원 민간위탁시설 및 민간직업소개소 지원사업
- 구인개척 및 구인정보 DB구축, 관리
-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 등

◆ 건설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 퇴직공제제도 운영
- 대부사업, 장학사업, 창업지원, 특정질환 진단사업, 새벽인력시장 쉼터 설치 등 **다양한 복지사업 개발 추진**
- 기능인 우대사업 및 우수기능인 **해외연수사업**
- 건설현장 복지증진 관련 수익사업

◆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 훈련수요, 고용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사업주 및 고용관리책임자 인식개선을 위한 **고용포럼** 운영

2. 전담 추진체계 구축

□ 필요성

○ 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부 본부**에 **건설고용정책**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

※ 1차 기본계획에서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계획되었으나 정책 집행조직 및 전달체계가 집중되지 못하여 개별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정책평가가 어려운 문제 발생

○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주요사업은 건설업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설계해야 하는 등 **집중적인 인력 투입 없이는 성과 달성이 어려울 전망**

□ 전략과제

○ **《기본계획 시행 추진단 구성·운영》** 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사 단체 등이 포함된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 기본계획 추진 관련 법령 개정, 재원확보, 공제회 기능 개편, 신규사업 기획 등의 업무 추진

○ **《고용정책심의회 내에 건설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고용정책 심의회의 하부기구로 **「건설고용정책전문위원회」**를 신설

- 2차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 담당

○ **《전담조직 운영》 노동부 본부**에 **건설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2차 기본계획 주요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를 담당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중 건설관련 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을 집중하여 담당

3. 재원 조성

□ 필요성

○ 건설 산업차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고용·복지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기금 활용과 더불어** 건설 **산업차원에서 신규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독일 사례 : 국가가 아닌 당사자가 건설업계 만의 고유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건설업계 사회복지조합(SOKA-BAU)을 설립·운영,

· 휴가권의 보상, 연금 보조 및 건설연금 운영, 직업훈련의 재정적 지원, 동절기 임금보상 등의 사업 추진

□ 전략과제

○ **《정부 지원 확대》** 산업차원의 재원조성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등의 확대 지원 방안 마련**

○ **《산업차원의 재원조성》 국토해양부, 사업주단체 등과 협의**하여 세부적인 재원조성 방안 마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법적 근거 마련('09년)

- 이와 함께 매년 퇴직공제금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을 휴면공제금으로 분류하여 피공제자 대상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휴면공제금 분류기준 및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Ⅶ. 향후 조치계획

1 건설 고용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09년)

○ 동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공제회 기능 확대, 산업차원의 재원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노동부) 등

2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액션 플랜" 마련 ('09년 상반기)

○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 개편 및 기능 확대 등을 구체화한 "액션 플랜" 마련** ('09년 상반기)

- 공제회의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기금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 "액션 플랜"마련을 위해 공제회 내에 작업팀을 구성·운영(필요시 인력 채용 및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3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작성 및 추진상황 관리(계속)

○ 본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매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차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신설 예정인 **「건설고용정책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에 전문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Ⅷ. 정책과제 소관부처(부서) 및 추진일정

과 제	'09	'10	'11	'12	'13	소관부처(협조기관)
1. 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1-1. 건설업 고용구조의 개선						
①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		■	■	■	■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②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개선	■	■	■	■	■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③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	■	■	■	■	■	국토해양부
④ 건설고용포럼 운영		■	■	■	■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1-2. 건설사업장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유도						
①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 제도의 정비	■	■	■	■	■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②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제도 개선	■	■	■	■	■	노동부(고용서비스지원과)
1-3. 무분별한 외국인력 활용방지						
① 건설업 취업허가제 실시		■	■	■	■	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
②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조사		■	■	■	■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외국인력정책과) 건설근로자공제회
1-4. 법정 근로조건 이행 정착						
① 서면근로계약 확산	■	■	■	■	■	노동부(근로기준과, 지역고용개발팀)
② 건설업 사용자 개념의 정비	■	■	■	■	■	노동부(근로기준과)
③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정착	■	■	■	■	■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근로조건지도과)
④ 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	■	■	■	■	노동부(근로조건지도과)

과 제	'09	'10	'11	'12	'13	소관부처(협조기관)
2. 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2-1. 거점 훈련기관 확충 및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구축						
① 지역별 거점 훈련기관 확충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직업능력정책과) 건설근로자공제회
② 훈련수요조사 및 훈련계획 수립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노동시장분석과) 건설근로자공제회
③훈련교재개발 및 훈련교사양성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2. 청년층 기능인력 유입 촉진						
① 훈련생 인센티브 강화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② 인턴 사원제 활용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2-3.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체계 마련						
①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②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 근거 마련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2-4. 자격의 활용 및 현장성 강화						
① 건설직종 자격증 활용방안마련						**국토해양부**
② 자격의 현장성 강화						**국토해양부** 노동부(자격정책과)
③ 건설직종 직업능력표준 개발						**국토해양부** 노동부(자격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건설기능경기대회 지원 강화						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과 제	'09	'10	'11	'12	'13	소관부처(협조기관)
3.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1. 건설취업지원 공공서비스 강화						
① 동절기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동부(고용서비스지원과, 지역고용개발팀)
②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과, 고용서비스지원과 지역고용개발팀)
3-2. 민간의 건설취업지원서비스 확대						
① 무료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고용서비스기획과 고용서비스지원과) 건설근로자공제회
② 양질의 직업소개소 양성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과, 지역고용개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③ 불법직업소개소 단속 강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과)
3-3 원활한 취업지원 기반 구축						
① 구인개척 시범사업 추진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② 구인정보 통합DB구축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③ 취업지원 전문인력 교육연수 및 사기진작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과 제	'09	'10	'11	'12	'13	소관부처(협조기관)
4.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4-1. 안전교육이수제도 도입						
①안전교육제도 도입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한국산업안전공단
4-2. 설계 및 감리 시 산업안전 고려 강화						
① 공공발주공사 설계 시 산업안전전문가 참여						국토해양부
② 감리에 의한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4-2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집중 관리						
①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협력모델 개발·보급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한국산업안전공단
②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원·지도의 활성화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한국산업안전공단
③ 재해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감독 강화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5. 특화된 복지 프로그램 제공						
5-1. 건설근로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① 특화된 고용복지사업 추진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② 건설현장 복지시설관련 사업						노동부(지역고용개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5-2 퇴직공제제도 적용확대						
① 적용범위의 확대						노동부 (지역고용개발팀)
② 공제부금 상향조정						노동부 (지역고용개발팀)
5-3.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① 보험료 부과기준 통일						노동부(산재보험과)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강화						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

〈 참 고 자 료 〉

1. 1차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평가

2. 건설근로자 관련 주요제도 개선 내용

3.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및 문제점

4.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

5. 최근건설업 수주액 동향

6. 중장기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인원 전망

7. 건설업 생산직 외국인 취업자 비중

8. 건설관련 자격증 체계 및 건설업 등록기준

9. 건설업 사회보험 가입율

10. 건설업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월 추이

11. 건설관련 자격증 체계

<붙임 1>

제 1차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평가

<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성 과
건설기능인력 양성체제의 확충	○ 지역거점 훈련기관의 지정·운영 ○ 청년인력 유입을 위해 건설업 기계·장비분야의 훈련 확대 ○ 건설사업주·사업주단체, 건설노조의 훈련시설 설치비용 및 장비비 지원 ○ 건설업의 훈련컨소시엄 제도 도입 ○ 건설관련 공고교육의 내실화	<성과> ○노사공동훈련(건설노사지원) 도입 ○건설업 훈련컨소시엄 도입 ○건설업기계·장비분야 훈련 확대
체계적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기반 마련	○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 건설노사단체 참여 확대 ○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 ○ 건설업 등 인력부족직종 훈련시 훈련수당 현실화 ○ 고용안정센터의 훈련상담기능 강화 ○ 건설일용근로자 경력관리체계 구축	<성과> ○경력관리체계 구축 등은 착수되지 못하였으며, 기타 과제도 전반적으로 미흡
건설산업교육훈련 위원회 설치 검토	○ 노사정이 참여하여 건설분야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전반을 논의하는 위원회 설치 방안 검토	<성과> ○미착수
건설관련 자격제도의 합리화	○ 건설관련 자격제도의 전면개편 추진 ○ 현장실무 자격검정제도 시범 적용 ○ 건설근로자 자격취득운동 추진 및 지원 ○ 민간 건설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입상자 기능사 시험 면제(노조 주관 민간경기대회도 지원)	<성과> ○건설관련 자격제도의 개편 추진, 현장실무자의 자격취득 지원, 민간 건설기능경기대회 지원, 건설직종 직무능력표준개발, 자격검정방법 개선 등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진행 중인 과제로 국토부 협력 하에 추가 노력 필요

<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유도 >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성과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개선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사업주단체에 의한 고용관리개선 교육·연수 지원	<성과> ○건설고용보험관리지원금 제도를 마련·시행함으로써 고용관리책임자 신고실적이 급증하고 있으나 형식적 운영 경향이 있음, 고용관리책임자교육, 연수는 미실시
고용·산재보험 가입기준 완화	○ 건설현장별 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수급사업주 인정기준 완화 ○ 건설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관리 편의를 위해 전자 카드제도 도입(시범운영)	<성과>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피보험자 관리 편의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시범운영, 허수급 인정기준 완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유도	○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 추진 ○ 직업훈련수료자 1년 이상 장기고용 유도를 위한 고용관리개선비용 지원방안 강구	<성과>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제도 도입 ○직업훈련수료생 지원금제도는 시행된 바 없음
공공직업안정기관 취업알선 강화 및 민간 취업알선조직 연계방안 강구	○ 일용근로자 전담 창구 설치·운영 ○ 일용근로자 취업알선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실시 ○ 일일취업센터를 일용근로자 고용안정센터로 확대 개편방안 강구 ○ 민간취업알선조직(사업주단체 포함) 연계방안 강구 ○ work-net에 민간인력정보 연계	<성과>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민간 위탁사업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 ○기타 과제는 추진 미흡

<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성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개선	○ 의무가입대상공사의 적용범위 확대 ○ 건설일용근로자 대부사업, 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확대	<성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확대(50억이상->5억 이상 공공공사 등) ○기타 복지사업은 미 추진
건설일용근로자 건강검진 기반조성	○ 일용근로자 건강진단 기반조성 ○ 직종별(도장작업, 용접작업 등) 유해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방안 중장기 검토	<성과> ○건강보험 적용확대로 건강검진 보편화로 정책기반 변화

< 붙임 2 >

건설근로자 고용 관련 주요 제도 개선 내용

구 분	제도개선 내용
근로기준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 도입('07년) ○ 건설업 도급공사에 있어서 임금지급 특례 신설('07년) ○ 주40시간제 건설공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법제화('08년)
산업안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사망사고 발생현장 확인 강화 등 제도개선('03년)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4천만원 미만까지 산업안전 관리비 적용확대('07년)
산재보험	○ 건설면허업체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전면적용('05년) ○ 레미콘 등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08)
기타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08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08년) ○타워크레인 소유자 등록 및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제 등('08년)
비고 (지원사업)	○건설고용보험관리지원금('06년)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08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 붙임 3 >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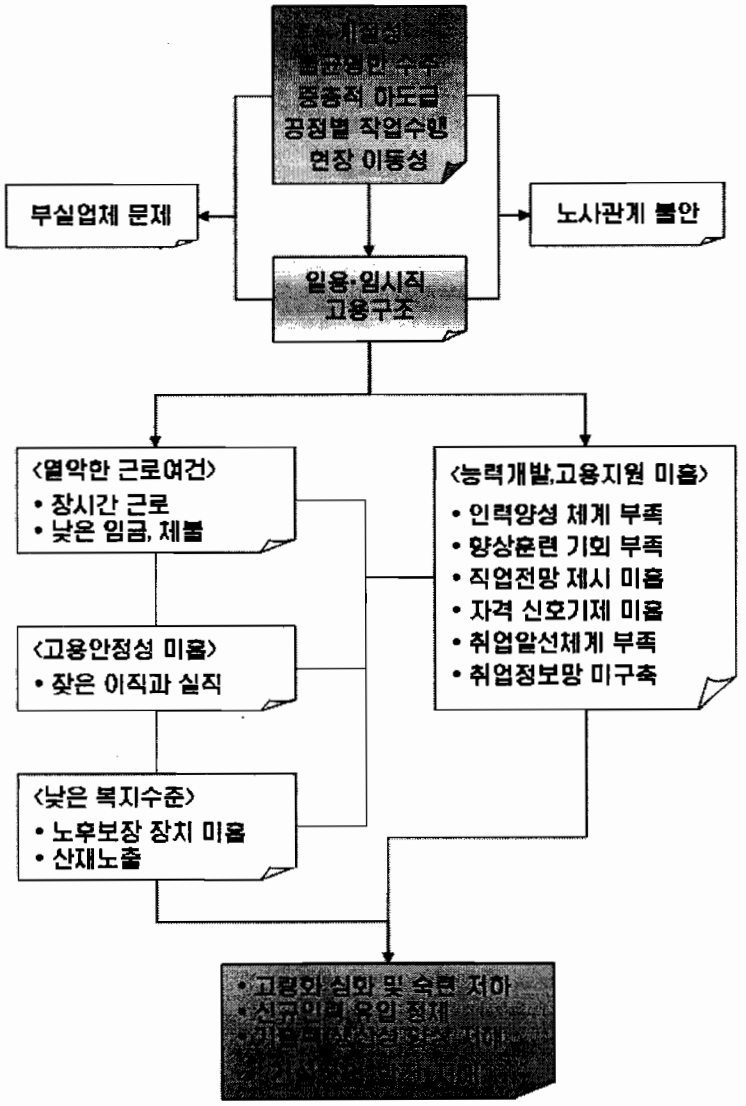

□ 정책여건

○ **(고용구조)**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제도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현장은 종전제도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커 잘 변화되지 않는 상황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생산구조의 최하위 단계인 십장·반장 등이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 **(근로여건)** 건설현장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도입,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등 제도상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었으나 현장은 각종 편법을 통하여 법망을 피하고자 하므로 지도감독 및 사업주 인식제고 등 추가적 노력 필요

□ 문제점

○ **(편중된 고용구조)** 건설생산직근로자의 대부분이 30인 이하의 영세업체에 고용(89.3%)되고, 주로 임시·일용직으로 고용(88.4%)되는 구조

☞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발굴 지원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 필요**

○ **(동절기 고용안정 미비)** 건설업은 옥외공사의 비중이 높아 동절기에는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되어 생계불안 가중

☞ **동절기 계속고용 지원 및 기능훈련 등 보다 촘촘한 대책 필요**

○ **(외국인력의 일자리 잠식)** 최근 건설현장에 외국인의 취업증가로 건설생산직의 **일자리 잠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

○ **(불합리한 관행 지속)** 장시간 근로와 휴무일 근로관행, 체불임금(쓰메기리)이 지속, 특히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불만이 큼

☞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법 준수 풍토 조성**

○ **(산업안전예방시스템 미흡)** 외국인 등 산업안전교육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전문건설업체 사업주 부담만으로 산업안전 문제를 철저히 대응하는 데는 한계

☞ **산업차원에서 건설노사 안전교육 강화, 안전보호구 지급 등 제도 마련 필요**

□ 정책여건

○ 건설산업의 규모에 비추어 교육훈련, 인력수급 및 자격체계 등 기능인력을 양성 및 관리하는 체계가 제도화되지 못함

○ 건설일용근로자 대부분이 부실한 취업 루트에 의존하는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

□ 문제점

○ **(건설기능훈련 시설 ·훈련기회 부족)** 실업자 훈련의 경우 건축시공 분야는 건설직종 훈련과정 공모를 하여도 민간훈련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훈련공급 부족 발생

- 재직자 훈련의 경우도 **이론교육 중심**으로 진행, 건설생산직의 기능훈련과정은 거의 없음

☞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 확충 필요**

○ **(훈련 수료 후 진입 저조)** 훈련수료생의 경우 건설업 취업으로의 연결이 미흡, 진입 후에도 건설업 이탈이 많음

* 건설업의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03년 247천명 → '07년 175천명)

☞ **양성인력의 지속적인 경력관리 및 체계적인 재교육,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부여 등 직업 전망제시 필요**

○ **(건설자격제도 활용 미흡)** 건설기능인력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

☞ **자격증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지원서비스 미흡)**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은 아직도 "인맥", "직업소개소", "(불법)용역업체"등 부실한 취업루트에 의존

☞ **건설취업지원서비스기관의 확보 및 관리 체계화**, 특히 서비스는 건설생산직의 특성에 맞게 제공할 필요

□ 정책여건

○ 종전 공식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퇴직공제운영 등 제도적 기반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

- 다만, 사회보험 가입율이 저조하고, 퇴직공제제도의 경우에도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미흡

*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 민간공사의 경우 공동주택 200호 이상 등이 대상이며, 공공공사는 5억원 이상 발주공사, 1일 공제부금액은 4,000원임

□ 문제점

○ **(사회보험 적용 저조)** 사회보험의 **적용 누락**에 의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는 일부에 불과

☞ **누락사업장 발굴 강화,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강화 등 필요**

○ **(퇴직금제도 불완전)** 현행 퇴직공제제도가 공공발주공사 중심으로 적용되고 **민간공사는 제한적으로 적용**

☞ **법정퇴직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

○ **(복지제도 취약)** 기존 각종복지제도는 제조업 등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임시·일용직이 다수인 건설기능직이 활용하기 곤란

☞ **건설기능직의 특성에 맞게 신청요건 등이 설계되고, 공제제도 등과 연계하여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개발 필요**

○ **(전달체계 미흡)**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취약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고용·복지관련 정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

☞ **건설기능직의 근로환경 개선, 고용·복지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허브기관 추진 필요**

<붙임 4>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國土硏)>

(단위: 조, 증감율)

구 분	총건설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2008	124.5(3.5)	38.6(4.6)	35.7(5.3)	50.1(1.5)
2009	129.4 (4.0)	40.6 (5.2)	38.1(6.7)	50.7(1.2)
2010	134.2 (3.7)	42.5 (4.5)	40.2 (5.5)	51.5(1.6)
2011	139.6(4.0)	44.5 (4.7)	42.4(5.6)	52.7(2.3)
2012	144.7(3.7)	46.2 (4.0)	45.1(6.3)	53.4(1.4)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국토부)

<붙임 5>

최근 건설업 수주액 동향

(단위 : 억원)

연 도	합계	증감률	공공	증감률	민간	증감률
'02	831,492	22.6	308,534	3.2	522,957	37.8
'03	1,024,478	23.2	322,165	4.4	702,312	34.3
'04	945,723	-7.7	337,645	4.8	608,078	-13.4
'05	993,840	5.1	318,255	-5.7	675,585	11.1
'06	1,073,184	8.0	295,192	-7.2	777,992	15.2
'07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08.상	551,230	-1.4	174,437	-22.1	376,793	9.4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경제동향」

<붙임 6>

< 중장기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인원 전망 >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부족인원	103,000	126,000	170,000	96,000	192,000	147,000
기능인력 부족인원	77,250	94,500	127,500	72,000	144,000	110,250
- 비숙련인력	10,330	5,959	8,101	-27,942	-8,389	-33,212
- 숙련인력	66,920	88,541	119,399	99,942	152,389	143,462

자료 : 김재영 외(2005), 신도시 개발 등이 건자재 및 건설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건설교통부 참조

<붙임 7>

<건설업 생산직 외국인 취업자 비중>

외국인 비중추이	건설업 외국인력 규모	전체 외국인력 중 건설업 외국인력비중	건설업 취업자 대비 외국인력 비중
2004 하반기	95,1621	19.8	5.21
2005 상반기	88,452	19.6	4.97
2005 하반기	75,962	18.2	4.14
2006 상반기	89,302	18.4	4.92
2006 하반기	101,198	18.7	5.45
2007 상반기	105,751	18.6	5.71
2007 하반기	134,342	24.0	7.27
2008 1~5월	169,227	23.8	9.33
2008 상반기 - 2004 하반기 격차			4.12

주 : 외국인 비중추이는 전체 건설업 취업자 중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붙임 8 >

< 건설근로자의 근로실태 >

□ 건설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구 분		근로자 응답	사업주 응답
근로 시간	평균(시간)	10.1	9.5
	전체	100.0	100.0
	8시간 미만	2.7	4.5
	8시간 이상~9시간 미만	14.8	17.2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	23.7	44.8
	10시간 이상~11시간 미만	**36.6**	**25.4**
	11시간 이상	**22.3**	**8.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근로실태 조사(2007. 5)

□ 건설근로자의 임금 형태(근로자)

구 분		구성비(%)
지급형태	계	100.0
	일당제, 매일 받는다.	**15.5**
	일당제, 일한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으로 받는다.	**74.2**
	도급제(성과급제, 돈내기 등)로 받는다.	8.5
	기타	1.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근로실태 조사, 2007. 5

□ 1개월 중 평균 일을 하지 못한 날(근로자)

(단위 : %)

구 분	평상시 (3~5월, 8~12월)	장마철 (6, 7월)	겨울철 (1, 2월)
평균(일)	8.6	13.6	13.6
전체	100.0	100.0	100.0
5일 미만	6.7	2.2	3.9
5일 이상~10일 미만	36.9	12.7	10.5
10일 이상~15일 미만	49.6	31.0	34.6
15일 이상~20일 미만	5.8	32.0	28.5
20일 이상	1.0	22.1	22.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근로실태 조사, 2007. 5

< 붙임 9 >

< 건설업 사회보험 가입율>

(단위: %)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경활 부가조사 2001	**건설업 생산직**	**11.5**	**12.4**	**13.4**
	제조업 생산직	58.0	60.9	60.3
	기타 생산직	46.7	50.1	42.6
	기타 임금근로자	56.6	58.9	48.8
	계	52.2	54.7	47.4
경활 부가조사 2007	**건설업 생산직**	**21.3**	**21.6**	**21.1**
	제조업 생산직	72.4	72.9	72.2
	기타 생산직	49.0	54.6	46.9
	기타 임금근로자	69.4	69.6	57.3
	계	63.2	64.4	55.3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 주의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입율을 보여기에는 한계가 있음

※ 행정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피용자의 '07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율은 49.4%, 고용보험가입율은 59.8% 임**

< 건설업 종사상지위별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단위: %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 체 근로자	상용	98.0	99.1	84.1
	임시	27.6	29.4	26.7
	일용	3.2	3.2	3.0
	계	63.2	60.7	55.3
건설업 생산직	상용	95.9	97.6	94.9
	임시	38.6	39.4	37.8
	일용	2.0	1.8	2.1
	계	21.3	21.6	2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년 8월 원자료

<붙임 10>

< 건설업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 >

(단위: 명)

구분	피보험자		실업급여수급자	
	상용	일용	상용	일용
'07.1	608,213	501,224	4,689	11,141
2	612,256	484,414	3,385	7,109
3	615,362	580,514	3,639	3,795
4	620,413	656,667	3,496	2,301
5	624,745	679,992	3,150	2,064
6	628,368	672,587	2,820	2,010
7	629,698	653,099	3,537	2,715
8	632,780	660,195	3,159	2,693
9	634,916	622,337	2,642	3,359
10	634,885	703,691	3,658	4,261
11	636,196	713,467	3,461	3,685
12	637,769	662,707	2,976	5,338
'08.1	**635,341**	**524,838**	**4,722**	**15,040**
2	638,283	503,167	3,547	10,911
3	639,313	593,928	4,161	6,423
4	642,066	638,531	4,185	4,447
5	646,449	646,950	3,771	3,770
6	647,912	591,323	3,575	4,097
7	646,552	418,054	4,353	5,504

* 자료: 건설업 고용보험 db 분석

< 건설업 피보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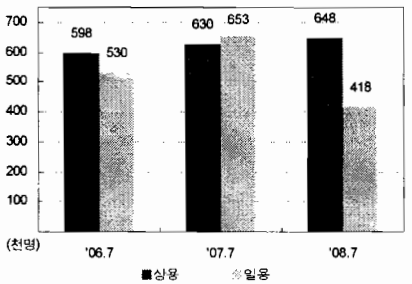

< 건설업 실업급여 수급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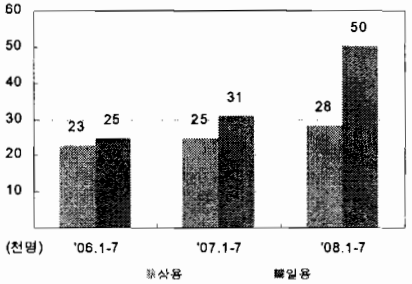

<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 월별 추이>

< 건설업 피보험자 추이 ('07.1-'0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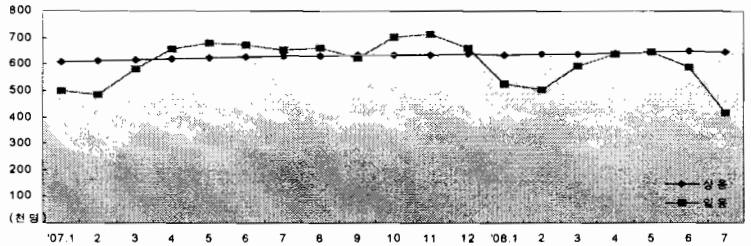

< 건설업 수급자격인정자 추이 ('07.1-'0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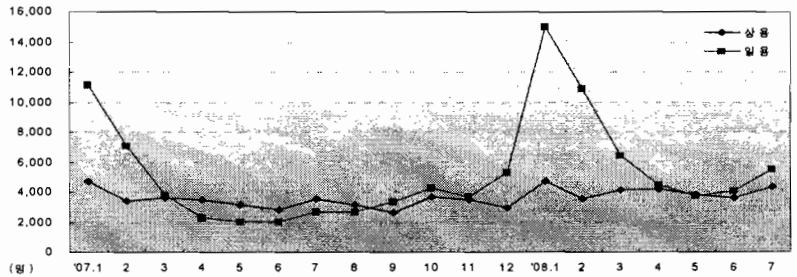

○ 상용피보험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일용직은 계절적 영향을 받아 동절기(12월-2월)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과 대비할 때 계절적 요인과 별개로 금년 7월부터 일용직 피보험자수가 급감하고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는 피보험자가 감소하는 동절기에 급증하여, 건설경기가 불황인 동절기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상당수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붙임 11>

<건설관련 자격증 체계>

□ 건설관련 국가자격 현황(국가기술자격법)

분 야	자격종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분야 (건축설계 · 시공, 목공, 도배, 방수, 철근, 창호제작 등 14종)	4	2	3	7	17
토목분야 (토목측량, 석공, 콘크리트, 도로항공, 수자원개발, 철도보선 등 11종)	11	0	5	5	6
기계분야 (용접, 제관, 배관, 굴착 · 성토 · 절지 건설기계 등 7종)	1	2	1	2	17
전기, 안전관리, 국토개발 분야 (전기공사, 조경, 소방설비 등 5종)	4	0	4	4	1
총계(37종, 96개 자격증)	20	4	13	18	41